KOSHA GUIDE

C - 96 - 2014

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한다.

- (2)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.
- (3) 설계변경 대상 부분은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,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시공할 수 있다.
- (4) 도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5) 설계변경금액확정요청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. 다만,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6.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
- (1)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. 다만,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.
- (2)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한 것으로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(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,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)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(3) 도급인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함으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 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계약당사